

제2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검토보고서.....24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7. 7.(화) 10:00
성주군의의회 본회의장

제299회 성주군의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성우의원외6인】
2.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6년 7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에 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 캄보디아, 베트남 화방면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조건
-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지자체간 협력 방안
-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도입 지자체	도입인원 (명)	이탈자 (명)	이탈률 (%)	비고
2023	필리핀 아팔릿시	260	3	1.1%	
	필리핀 마갈랑시	271	37	13.6%	
2024	필리핀 아팔릿시	390	6	1.5%	
	필리핀 마갈랑시	235	72	30.6%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3	2	6%	
	필리핀 로렐시	121	25	20.6%	
	라오스	153	-	-	
2025	필리핀 아팔릿시	402	14	3.5%	
	필리핀 루바오시	54	-	-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2	-	-	
	필리핀 로렐시	12	5	41.6%	
	라오스	1,295	1	0.007%	
	베트남 헝득면	8	4	50%	
2026 상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207	5	2.4%	
	필리핀 루바오시	32	2	6.2%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20	-	-	
	라오스	1,197	2	0.16%	
	베트남 헝득면	65	5	7.7%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및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나. 참고자료

- 1) 관련 법령
- 2) '26년 체결 협정서(안)
- 3)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참고 1]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참고 2] '26년 체결 협정서(안) - 별첨

[참고 3]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 캄보디아

- 수도 : 프놈펜
- 면적 : 181,035km²
- 인구 : 약 1,760만명
- 언어 : 크메르어
- 주요산업 : 농업
 - 쌀, 카사바, 옥수수 등

□ 베트남 화방면

- 소속 : 다낭시
- 면적 : 708km²
- 인구 : 약 20만명
- 언어 : 베트남어
- 주요산업 : 농업
 - 벼, 옥수수, 채소류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농촌인력지원단 농촌인력2팀장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아래에서는 "성주군"이라 칭함)
2.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 (아래에서는 "화방면"이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성주군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 동안 성주군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한다.
-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 기본비용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❶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❷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❸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아. 양측은 근로자에게 행정비용을 부과할 경우 그 상세 내역과 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경상북도 성주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마. 성주군은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사. 부속합의서의 제4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가. 성주군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라. 성주군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베트남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마. 성주군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화방면과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화방면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20% 이상 이탈 시 화방면은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25명 이상이면서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35명 이상이면서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성주군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성주군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및 2026년 월 일 베트남 화방면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을 대표하여
화방면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붙임 부속합의서 1부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주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주관부서: 농촌인력지원단
- 연락처: 054-930-6282 , 팩스/이메일: hyein0204@korea.kr

나.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 인민위원회

- 주소: So 2, duong duong lam 2, xa hoa vang, thanh pho Da Nang
- 주관부서: 화방면 인민위원회
- 연락처: +84 236 3 846160 , 팩스/이메일: +84 236 3 846160

2.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 대상: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화방면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 종사자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마. 제외대상: 색약·색맹,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15일 이내에 전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베트남에서 직접 주관하는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 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필수 행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가. 송출인원: 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성주군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한다.

※ 근로자는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국내 지자체 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총 근로시간 × 연도별 최저시급

- 임금 산정은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며,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장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수령증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와 농장주는 기본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을 때에는 농장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부여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를 교부해야 한다.

- 비닐하우스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단, 대한민국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의 숙박은 가능하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채불이 있는 경우 성주군, 출입국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입·출국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한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성주군 간 이동은 성주군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15일 이내에 전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베트남으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 성주군, 화방면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성주군은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성주군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지자체에서 새로운 근무처 알선 등 근로 계약을 지원해야 한다. (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하고, 성주군과 화방면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성주군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을 대표하여
화방면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캄보디아왕국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협약의 체결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이하 "성주군"이라 칭함)
2. 캄보디아왕국 노동직업훈련부 (이하 "MLVT"라 칭함)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캄보디아왕국 노동직업훈련부 (이하 "양측"이라 칭함)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캄보디아왕국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송출기관 및 수용기관

- MLVT는 캄보디아 계절근로자의 모집·선발 및 대한민국 송출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 본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외국인력송출청(이하 "MTOSB"라 칭함)을 공동 송출 기관으로 한다.
- MTOSB는 캄보디아 근로자의 모집, 선발, 사전교육 및 송출을 직접 수행하며, MTOSB 이외의 다른 기관은 본 업무협약에 따른 인력 송출 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를 수용하고, 고용주 배정, 근로조건 확인, 체류관리, 상담 및 지원 등 국내 운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제3조. 업무협약 이행 원칙

- 본 업무협약의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캄보디아왕국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성주군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 본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 동안 성주군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 5개월 근로자 중 성실히 근무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 및 재계약을 통해 3개월 이내에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업무협약에 대한 부수적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측은 본 업무협약에 따른 캄보디아 국적 계절근로자의 선발 및 파견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왕국의 법률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 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한다.
-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와 비자발급, 건강검진, 사전교육 등 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별도의 관리비용(수수료)을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a)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 선정, 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 (b)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 (c)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양측은 근로자에게 행정비용을 부과할 경우 그 상세 내역과 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경상북도 성주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계절근로자가 캄보디아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성주군은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 부속합의서의 제4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캄보디아왕국 노동직업훈련부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성주군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발·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위임하지 않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 필요한 행정절차, 비자 신청 시 서류 준비, 해외 취업허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 성주군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캄보디아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 성주군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MLVT와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 ① MLVT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20% 이상 무단이탈 시 해당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 ② 캄보디아왕국 전체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25명 이상이면서 50% 이상 무단이탈 시 캄보디아왕국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 ③ 캄보디아왕국 전체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35명 이상이면서 70% 이상 무단이탈 시 캄보디아왕국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성주군과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 성주군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제5조. 이행조항

-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및 2026년 월 일 베트남 화방면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캄보디아 왕국을 대표하여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붙임 부속합의서 1부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주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주관부서: 농촌인력지원단
- 연락처: 054-930-6282
- 팩스/이메일: hyein0204@korea.kr

나. 캄보디아왕국 노동직업훈련부

- 주소: Building No. 3, Russian Federation Blvd., Sangkat Teuk Laak I, Khan Toul Kork, Phnom Penh, Cambodia.
- 주관부서: Manpower Training and Overseas Sending Board
- 연락처: (+855)16 987 514, Ms. Van Sreyroth, Administrative official
- 팩스/이메일: sreyroth2401@gmail.com

2. 선발 대상 및 기준

- 가. 선발대상: 캄보디아왕국 캄퐁참주, 칸달주, 타케오주, 프레이벵주 및 캄퐁스페우주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남, 여
- 다. 자격: 본국에서 농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
-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 마. 제외대상: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색약·색맹, 기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15일 이내에 전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사. 캄보디아왕국에서 직접 주관하는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필수 행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 가. 송출인원: 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성주군의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 다. 근로분야: 농업 분야 (농작물 관리, 재배 및 수확, 포장 등)
- 라. 근로지역: 대한민국 성주군 농업 관련 작업장 또는 고용 농가의 농업 경영 농지에 한함

4. 근로조건

-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한다.
 - ※ 근로자는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국내 지자체 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함
-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총 근로시간 × 연도별 최저시급
 - 임금 산정은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며,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장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수령증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와 농장주는 기본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을 때에는 농장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부여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절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를 교부해야 한다.
 - 비닐하우스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 단, 대한민국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의 숙박은 가능하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성주군, 출입국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입·출국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한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성주군 간 이동은 성주군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15일 이내에 전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캄보디아왕국으로 귀국절차 및 비용은 주한 캄보디아왕국대사관, 성주군, 노동직업훈련부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성주군은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성주군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지자체에서 새로운 근무처 알선 등 근로 계약을 지원해야 한다. (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성주군과 노동직업훈련부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성주군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캄보디아 왕국을 대표하여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7. 7.(화) 10: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99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2.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 자원순환사회 구축, 지역 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마.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종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17조)
- 바. 주변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사.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등의 지원사업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후 지원 해야 할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실종자 수색대원의 복리를 보장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실종자 수색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고, 신속한 수색작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안 제5조제2항제4호)

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 주차요금 감면(안 제5조제2항제5호)

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으로 제목 변경 (안 제19조)

마.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장애인주차구획 기준 명시

(안 제19조제1항제1호~제19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차장법」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임산부,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가정의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 및 감면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부설주차장, 노상·노외 주차구획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성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지원센터 조례의 목적, 위치, 기능(안 제1조~제3조)
- 나. 시설의 운영지원, 사용, 사용료 감면, 관리·운영(안 제4조~제7조)
- 다. 위탁기간, 위탁의 취소, 감독(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특성화 산업 발굴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의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역할과 위탁 사항, 그리고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기업의 창업과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여 성주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결집과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향우회의 권리, 책무 사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출향인 등에 대한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예고기간 : 의견없음(2024. 11. 11. ~ 11. 18.)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과 향우회 간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인의 지역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위해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등 문화·체육 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총괄

- 현행 :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 변경 : 2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

나. 과 신설 및 명칭변경 (안 제3조)

- 신설(1): 경제교통과
- 분리(1): 산림축산과→산림과, 축산과
- 폐지(1): 새마을교통과
- 명칭변경(4) : 자치행정과→총무새마을과, 미래전략과→미래전략실
기업경제과→기업지원과, 허가과→건축허가과

다. 분장사무 조정 주요내용 (안 제4조 및 제14조)

- 자치행정과	교육업무	→ 미래전략실
	정보통신업무	→ 경제교통과
- 재무과	공무원 급여	→ 총무새마을과
- 미래전략과	농촌개발,공간개발업무	→ 도시계획과
	역세권개발업무	→ 도시계획과
	청년 외국인 지원 신설	→ 미래전략실
- 환경과	생태하천복원사업	→ 건설과
	가축분뇨 지도단속	→ 축산과
- 산림축산과	축산, 축산방역업무	→ 축산과
- 기업경제과	지역경제업무	→ 경제교통과
	에너지업무	→ 경제교통과
- 도시계획과	공공임대주택 업무	→ 건축허가과
	공단조성업무	→ 기업지원과
	건축안전 관리 업무	→ 안전과
	경관,옥외광고물,공사감독	→ 건축허가과
- 새마을교통과	단체관리,자원봉사	→ 총무새마을과
	행락업무	→ 안전과
	환경청결운동,깨끗한성주	→ 환경과
	교통행정,교통지도	→ 경제교통과
- 허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자치행정과-21463(2024.11.1.)호)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4. 11. 1. ~ 11. 5.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신설, 분리·폐지, 명칭변경 등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에서 2실17과2직속기관 3사업소 1읍9면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반영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가. 지역현안 수요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나. 의회 전문위원 5급→6급 급수 조정 및 팀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제3조2항 관련 별표2)

-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행	1% 이내	5.2% 이내	25.2% 이내	29.2% 이내	24.9% 이내	13.7% 이상	0.8% 이내
개편	0.8% 이내	5.0% 이내	25.1% 이내	29.2% 이내	26.0% 이내	13.1% 이상	0.8% 이내

- 나. 정원표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3)

- 직급별·기관별 정원 조정내역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
총 계	699	366→367	15	101→100	...
일반직	662→663	358→360	15	72→71	...
5급	33	16→17	3→2	2	...
6급 이하	620→621	336→337	12→13	68→67	...
⋮	⋮	⋮	⋮	⋮	...
연구사	8→7	6→5	-	2	
⋮	⋮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자치행정과-20862(2024.10.25.)호]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제외대상(「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2024. 10. 29. ~ 11. 4.

바.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주군 행정기구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의회 전문위원 급수를 5급에서 6급으로 조정하며, 팀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 현안 수요 대응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25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 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

1)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함.

2) 추진계획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01. : 감정평가 의뢰
- 2025. 02. : 부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00,000천원(군비 100%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취득(토지) :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 2,995m²

5)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천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가감정 평가액	비고
			2,995	198,508	
1	성주읍 삼산리	498-4	101	5,717	
2	성주읍 삼산리	713-21	159	8,999	
3	성주읍 삼산리	713-59	2,735	183,792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7)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4. 6.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를 득하였으나, 건축물 착공 전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하여 사업부지 내 편입 의견 회신(허가과)
- 2024. 9. :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건설과)
- 2024. 9. : 국유재산 분할측량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
- 2024. 11. : 2025년도 예산편성
- 2025. 1. : 감정평가 의뢰
- 2025. 2. : 토지매입(소유권 이전)완료 예정

8) 필요성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국유지 매입 ·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부지 내 국유지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나.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1) 사업목적

- 선남면 거점지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기능을 확충하고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 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하고자 함.

2) 소요예산

- 총사업비 : 9,196,700천 원(국비 70% 도비 7% 군비 21%/균특회계)
 - 토지 취득 : 1,953,900천 원
 - 건물 신축 : 7,242,800천 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천원)	금 액	비고
총 계		①+②+③+④	7,242,800	
공사비		소 계(①)	6,398,600	
	건축	1,391 ^{m²} x 4,600천원	6,398,600	
용역비		소 계(②)	406,300	
	세부설계비(건축)	건축 공사비 x 4.31%	275,800	
	추가설계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20,000	
		장애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10,000	
	공사감리비	건축 공사비 x 1.57%	100,500	
기타		소 계(③)	437,900	
	예비비	(공사비+용역비+보상비) x 5%	437,900	

3) 사업규모

- 토지 취득 : 선남면 관화리 434-4번지 외 4필지 1,503^{m²}
- 건물 신축 : 3층, 1391^{m²}

4) 기준가격명세

(단위 : m², 천원)

연번	구분	소재지	구조/용도	지적	기준가격	비고
1	토지	선남면 관화리 434-4 외 4필지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1,503	310,267	
	건물			1,391	7,242,800	가감정 평가액

5) 계약방법

- 토지 협의취득

6)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별고을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1층 공동육아나눔공간 : 아이놀이공간, 독서놀이공간 등
 - 2층 주민커뮤니티공간 : 문화활동실, 외국인사랑방 등
 - 3층 청소년오픈캠퍼스 : 청소년문화실, 음악활동실, 북카페 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06. : 농촌협약 공모선정(농식품부)
 - 2023. 07. ~ 2024. 02.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검토·조정, 대상사업 확정
 - 2024. 04. : 농촌협약 체결(농식품부 ↔ 시·군간)
 - 2024. 05. : 선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24. 08. : 선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05.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025. 06. : 토지 매입
 - 2025. 12. :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2026. ~ 2027. :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착공 및 준공

7) 기대효과

- 핵심 중위거점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중심지-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으로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교육과 시설 운영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관리로 지역발전 도모

다.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1) 사업목적

- 초전면 용봉리 일원에 축사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 해소로 지역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고자 함.

2) 추진계획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12. :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25. 1. : 당초예산 편성, 감정평가 실시
- 2025. 3. : 보상금 통보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36,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 군비 4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취득(토지) : 초전면 용봉리 산5-2번지 외 329필지 934,920㎡

5) 기준가격 명세

(단위 : ㎡, 백만원)

연번	소재지	지적	기준가격	비고
1	초전면 용봉리 산5-2번지 외 329필지	934,920	5,866	

6) 계약방법

- 협의취득

7)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 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
- 2023. 11.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 2023. 11. ~ 12. : 주민 회의(1차~2차)
- 2024. 2. : 지장물건조서 작성
- 2024. 3. : 가감정 실시, 동의서 협의
- 2024.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4. 12. :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25. 1. : 당초예산 편성, 감정평가 실시
- 2025. 3. : 보상금 통보

8) 기대효과

가) 세종대왕자태실, 선석사, 인촌지 수변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사드배치로 인해 상처받고 분열된 지역 민심회복 및 침체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다) 성신농원의 대규모 축사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나 후적지 활용을 통하여 지역민의 거주환경 및 삶의 질 개선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국유지 취득 >

- 본 안건은 환경기초시설 집적화단지 내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주읍 삼산리 498-4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2,995m²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2억원입니다.
-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

- 본 안건은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434-4 외 4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391m²로 건물신축 비용 72억 4천 2백 8십만원과 토지 취득 비용 19억 5천 3백 9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91억 9천 6백 7십만원입니다.
- 선남면 별고을 문화누리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 중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육 여건 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초전면 용봉리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 >

- 본 안건은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산 5-2번지 외 329필지에 축사 악취 및 수질오염 문제 해소를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자연생태환경을 복원을 위해 부지면적 934,920m²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비용은 360억원입니다.
- 축산업이 주를 이루는 용봉3리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신원 정비사업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후적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과 상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시간 규정(안 제4조)
- 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 개정(안 제6조, 제8조)
- 다. 관리위탁 규정(안 제11조)
- 라.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삭제(제13조 ~ 제16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나. 입법예고 : 2024. 9. 13. ~ 10. 4.
-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기획예산실-12676(2024.9.4.)호]
-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가족지원과-43347(2024.9.10.)호]
- 마.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성주역사충절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이용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 기준,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역사충절공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항목 명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817(2024.10.10.)]

다.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6633(2024.10.4.)]

라.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20일간)

마.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등에 재정지원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비 신설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회복을 지원하여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5조제1항제4호)

- 기간 확대 : 36개월(3년) → 72개월(6년)
- 지원금액 확대 : 37~72개월(3년) 첫째아 이상 10만원 추가지급
- ※ 첫 임신, 출산, 첫 돌맞이 축하금 지원 중단

나.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설(안 제5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산정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예산실-11325(2024.09.26.)]

라.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없음 [가족지원과-45728(2024.09.26.)]

마.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

바. 비용추계서 : 별첨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산양육지원금을 36개월에서 72개월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36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며, 임산부의 출산 후 건강한 산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미비한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 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안 제10조, 별표1)
- 나. 운영자의 체육시설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자 귀책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배상 비율을 규정함(안 제14조)
- 다. 성주체육관을 건강문화캠퍼스로 명칭 변경(안 별표1, 별표3)
- 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대회 출전을 위한 군 대표팀 훈련시 사용료 면제 및 「다자녀 가정」 기준 구체화(안 별표2)
 - ※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기준(2명 이상)
- 마. 공공체육시설물 이관으로 인한 시설물 추가(안 별표3)
 - ※ 용암 게이트볼장, 수륜 풋살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5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대관 취소 환불 수수료 100만원)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지원과-46059(2024. 9. 30.)]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 10. 14.)]

마. 입법예고 : 2024. 10. 17. ~ 11. 6.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료, 감면기준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 이유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4조)
- 나. 체육센터 운영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라. 강사 등의 근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제24조~제26조)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10. 17. ~ 2024. 11. 06.
 -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기획예산실-11909(2024.10.14.)]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개선사항 없음[가족지원과-46060(2024.09.30.)]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주 반다비 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라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하여 지역사회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 사회통합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